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강민국의원안)	2

I. 개요

1.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4.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의 투자진흥지구로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로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
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
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
21조의36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강민국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5장의12 우주산업클러스터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6) ○ 감면대상: 투자진흥지구*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 감면율: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 ☐ 우주산업클러스터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정(제121조의 37)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 적용기한: 2027.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강민국의원안 2024. 6. 11. 제출(의안번호 125)

☐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이라 함)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는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일정한 요건¹⁾을 충족하여 지자체장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을 의미함.

동 법률안은 우주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가 있는 지역 내에 「초·중등교육법」의 특례를 적용 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관,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의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항공우주 및 우주 개발산업 관련 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성공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적인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음.

특히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관련 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기업의 입주지원을 통해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항공·우주 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있어 R&D 및 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³⁾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산업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세액감면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데, 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개납주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최저한세의 취지에 비추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⁴⁾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삭제

□ 참고로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7호)⁵⁾은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당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세감면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개별 법률에서 조세특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 감면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지원 규정이 삭제되어 소관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55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이하 생략)

5) 주요내용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